##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백종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3662

발의연월일: 2021. 12. 1.

발 의 자: 백종헌・강기윤・정운천

구자근 · 장제원 · 서정숙

조경태・최연숙・유경준

최춘식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비급여항목 비용을 지불한 자는 건 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비용이 비급여가 맞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, 확인 결과 해당 비용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급여대상인 경 우에는 과오납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은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제도와 관련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, 제도 이용 시 제출서류나이와 관련한 운영 절차, 방법 등을 명확히 규율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사항에 대한 하위 법령으로의 위임 근거도 미비한 상태임.

이에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제도 신청 시 구체적인 방법과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며 궁극적으로는 제도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(안 제48조제4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확인 요청의 범위, 방법, 절차, 처리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8조(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	제48조(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
인 등) ① ~ ③ (생 략)	인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
	른 확인 요청의 범위, 방법, 절
	차, 처리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
	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